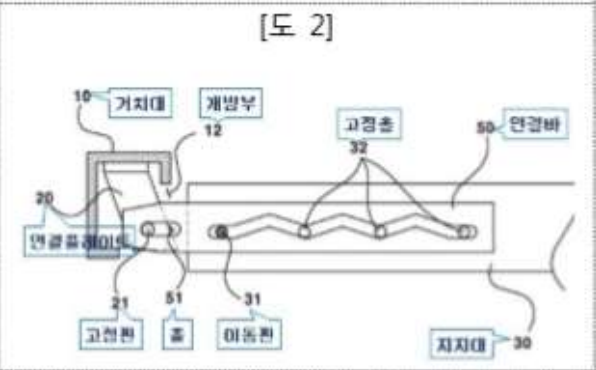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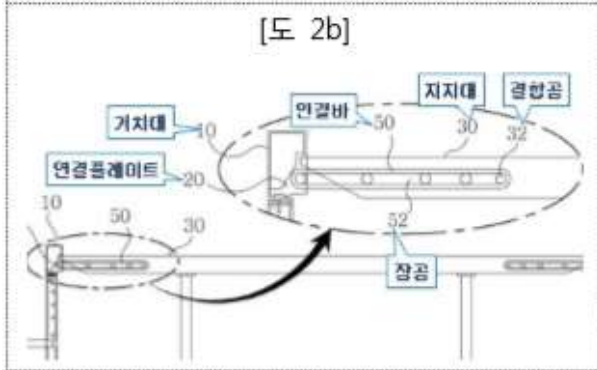


1.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

이 사건 제1항 발명	확인대상발명
<p>[구성요소 1] 대면하는 벽체 거푸집(WF) 상단을 따라 각각 설치되는 4각 파이프 형상으로, 길이 방향 일부 또는 전체에 상호 대면하는 대향면과 하부면을 'L'자형으로 절개한 형상의 개구부(12)가 형성된 거치대(10)</p>	<p>- 벽면 거푸집 상단에 부착되며, 개방부(12)가 형성된 거치대(10). - 거치대(10)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, 사각 배관 형태이며, 일측에는 개방부(12)가 형성됨(이하 '확인구성요소 1'이라 한다).</p>
<p>[구성요소 2] 상기 거치대(10)의 길이 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 이격되어 설치되는 것으로, 거치대(10)의 내측면에 측면이 결합되는 연결 플레이트(20)</p>	<p>- 연결 플레이트(20)는 거치대(10) 내면 상단에 일면이 부착 결합하며, 평행사변형 형태로 구성되어 개방부(12)까지 연장 형성됨. 거치대(10)의 길이 방향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됨(이하 '확인구성요소 2'라 한다).</p>
<p>[구성요소 3] 대면하는 상기 거치대(10) 사이에 설치되어, 슬래브 거푸집(SF)을 지지하는 지지대(30)</p>	<p>- 거치대(10) 사이에 배치되어 슬래브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지대(30)(이하 '확인구성요소 3'이라 한다)</p>
<p>[구성요소 4] 상기 지지대(30)의 하부에 설치되어 지지대(30)를 지지하는 서포터(40)</p>	<p>- 지지대(30) 하부에 설치되어 상기 지지대(20)를 지지하는 서포터(40)(이하 '확인구성요소 4'라 한다)</p>
<p>[구성요소 5] 길이 방향을 따라 장공(52)이 형성되는 것으로, 일단은 장공(52)을 통하여 연결 플레이트(20)에 핀 결합되고, 타단 또는 길이 방향 일부는 장공(52)과 지지대(30)를 관통하는 연결철물(72)에 의하여 지지대(30)에 연결되되, 상기 일단을 기준으로 회전 가능한 연결바(50)</p>	<p>- 연결 플레이트(20)와 고정핀(21)에 의하여 결합하는 홀(51)과 지지대(30)에 이동핀(31)에 의하여 결합하는 슬롯(52)이 형성된 연결바(50)(이하 '확인구성요소 5'라 한다)</p>
<p>[구성요소 6] 상기 지지대(30)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, 지지대(30)는 연결바(50)의</p>	<p>- 지지대(30)는 ---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막대 형태로 구성되며, 길이 방향으로 다수</p>

회전에 따른 연결바(50)의 하강에 따라 높이가 조절됨.

의 고정홀(32)이 형성되어 있으며, 이동편(31)은 다수의 고정홀(32) 중 선택된 고정홀(32)에 결합하며, 상기 고정홀(32) 위치에 따라 지지대(30)의 하강 길이가 결정됨 (이하 '확인구성요소 6'이라 한다).



## 2. 출원심사경과 - 보정 및 의견서 주장 내용

①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항 1 에 의하면, “지지대는 연결바의 회전에 따른 연결바의 하강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것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지대의 형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. 따라서 보정 전 1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는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확인구성요소 6 과 같은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②그 후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발명의 출원인이었던 원고 오경근에게, 보정 전 1 항 발명과 선행기술에 기재된 ‘해체가 용이한 슬라브 거푸집 지지바’ 는 거치대와 연결플레이트, 지지대, 서포터, 장공이 형성되어 연결플레이트와 지지대에 핀 결합되는 연결바를 포함하는 슬레브 거푸집의 지지구조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여

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정 전 1 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. 그런데 선행기술의 도면에 의하면,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대와 같은 '사각형 막대 형태'임을 알수 있다.

③그러자 출원인은, ㉠보정 전 1 항 발명에 "지지대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"를 추가하고, ㉡'과제해결수단' 항목과 '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' 항목에 "지지대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"를 추가하였으며, ㉢나아가 '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' 항목 중 지지대에 관하여, "지지대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 할 수 있으며"를 "지지대의 양단 하부를 모따기하며" 로 변경하여, 결과적으로 모따기 구성이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변경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다.

④또한 출원인은 위 보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지대 양단 하부가 모따기되어 있는 구성 및 그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특허발명은 특허결정되었다.

⑤위와 같은 1항 발명의 출원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, 출원인은 1항 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지지대를 가진 선행기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차별화하여 '지지대 양단 하부를 모따기 한 것'으로 한정

하여 위 부분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임을 강조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.

### 3. 권리범위에서 의식적 제외 - 균등론 적용 배제

확인구성요소 6 의 '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지 않은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'는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었다가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제시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의도적으로 '양단 하부가 모따기 된 사각형 막대 형태의 지지대'로 변경하여 그 구성을 배제시킴에 따라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 따라서 이처럼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과 같은 확인구성요소 6 의 '양단 하부가 모따기 되어 있지 않은 사각형의 막대 형태의 지지대'는 구성요소 6 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.

첨부: 특허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허7432 판결

약사변호사/바이오전공 변호사, 약사법, 행정소송, 특허심판소송, One-Stop 전략적 대응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